#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 안 번 호 234

제안년월일: 2022년 9월 28일 제 안 자: 보건복지위원장

#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○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「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125호)에 대해 제 314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(2022년 9월 28일)에서 심사한 결과,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○ 정책 대상을 기존에 경력단절여성등에서 취업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 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·강화하기 위해 전부개 정된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이 지난 2022년 6월 8일 시행됨에 따라「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125호)에 포함되지 않은 조문의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바, 위원회 대안을 통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 려는 것임.

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○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.(안 제명)

-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을 반영하여 확대하여 규정함.(안 제2조).
- 정의규정에 경력단절여성등의 대상을 확대하고, 경력단절 예방을 신설함.(안 제2조).
- 시장의 책무를 상위법을 반영하여 확대하여 규정함.(안 제3조).
- 연도별 시행계획, 실태조사, 통계의 작성·관리의 범위를 상위법을 반 영하여 확대하여 규정함.(안 제4조, 안 제5조, 안 제5조의2).
- 경제활동촉진사업의 범위를 상위법을 반영하여 확대하고, 경력단절여 성등의 구직활동 및 고용촉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.(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)
- 경제활동촉진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,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 구체 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6조제3항 신설)
- 경제활동촉진사업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.(안 제6조의2 신설).
-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실시의 범위를 상위법을 반영하여 확대하여 규 정함.(안 제8조)

#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목제명 "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"를 "서울특별 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"을 "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"으로, "경력단절여성 등의 재취업 촉진활동"을 "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"으로, "자아실현"을 "지속적인 지 역경제 발전"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"돌봄 등"을 "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3. "경력단절 예방"이란 여성이 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.
- 4. "일경험 지원 사업"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 등을 말한다.

제3조 중 "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"을 "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

력단절 예방"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시장은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 제4조"를 "시장은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제5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경력단절 예방을 위한"을 "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경력단절여성등"을 "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"으로 한다.

- 1.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
- 2.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

제5조 중 "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"을 "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"으로, "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"을 "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"으로 한다.

제5조의2 중 "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"을 "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"으로, "경력단절여성등에"를 "여성의 경제활동에"로 한다.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"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"를 "여 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"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 분)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에 자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

5. 일경험 지원 사업

- 7. 구직 · 고용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
- 8.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,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조의2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시 출자·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8조제1항 중 "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"를 "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기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개 혅 했 정 아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경제활동 촉진 조례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「경력단</u> 제1조(목적) ----- 「여성의 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<u>경력</u> 법」----- 여성 단절여성 등의 재취업 촉진활동 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 예방-----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 --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---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(정의) -----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"경력단절여성등"이란 혼인 | ·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구 | 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 ----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-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. 2. (생략) 2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3. "경력단절 예방"이란 여성이 <u>혼인 · 임신 · 출산 · 육아와 가</u>
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혅 햀

- 1.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 망
- 2.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
- 3.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 한 주요 시책
- 4.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## ③ (생략)

- 제5조(실태조사) 시장은 효율적인 제5조(실태조사) -----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 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 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정기적으 로 실시할 수 있다.
- 제5조의2(통계의 작성・관리) 시 제5조의2(통계의 작성・관리) --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과적 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경력단절 |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활용 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 · 관리할 수 있다.
- 제6조(경제활동촉진사업) 시장은 | 제6조(경제활동촉진사업) ① ---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|

개 정 o}-

- 1.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 향
- 2.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 력단절 현황과 전망
- 3. ----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----
- 4. ----- 여성의 경제활동 촉 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 절 예방 -----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-----

----- 여성의 경 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------ 여성의 경제활동에

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

현 행	개 정 안
<u>촉진하기</u> 위하여 다음 각 호의	절 예방을
사업을 할 수 있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여성인턴쉽 프로그램 운영	<u>5. 일경험 지원 사업</u>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7. 구직·고용 촉진을 위한 구
	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
	<u>원금 지원</u>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	8.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
인정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을	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
위한 사업	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	<u>사업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
	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
	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
	를 지원할 수 있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
	원 대상,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
	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
	<u>정한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제6조의2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
	제6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전
	<u>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또</u>
	는 시 출자·출연 기관에 위탁
	<u>할 수 있다.</u>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

현 행	개 정 안
	려는 경우「서울특별시 행정사
	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
	<u>를 따른다.</u>
제8조(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실시)	제8조(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실시)
① 시장은 <u>경력단절여성등의 경</u>	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
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	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기
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	
실시할 수 있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